

엔에이치엔 주식회사

ESG위원회 규정

제1장. 총칙	1
제2장. 구성	2
제3장. 회의	3
제4장. 부의사항	4
부칙	5

제1장.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,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12조에 열거된 사항을 의결한다
-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2장. 구성

제4조(위원)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사무국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내 조직을 위원회 사무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사무국 내 지정된 담당자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할 직원 수명을 사무국에 둘 수 있다.

제3장. 회의

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

위원회를 소집하는 위원은 회의의 개최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의 3영업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 출석 인원 중 특정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안의 결의 시에는 해당 이해당사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.
- ③ 위원회는 물리적인 장소에 동시에 출석하여 위원회를 진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위원회를 진행할 경우의 결의사항을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인정한다.

제10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위원회 의사록은 위원회에서 정한 안전한 장소에 원본과 부본을 3년간 보존한다.

제11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4장. 부의사항

제12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사 ESG 주요 분야 추진 방향 및 성과
2. ESG 의무 공시 사항
3. 국내외 주요 ESG 평가 결과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
4.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
5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3조(결의사항의 통지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